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 발의연월일: 2020. 6. 8.

발 의 자:김경만·박홍근·권칠승

김교흥 · 김병욱 · 박 정

신정훈 · 위성곤 · 진성준

강준현 · 김수흥 · 김영배

김회재 · 서영석 · 양향자

이용선 · 조오섭 · 김홍걸

유정주 • 이동주 • 한무경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

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기업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정협의를 위해 객관적인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 중앙회를 추가함(안 제22조의2제2항).
- 나. 조정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 정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로, "조합원인 수탁기업"을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 "수탁기업의 신청을"을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 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생 략) 납품대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 호에-----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 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 -----조합원(「중소기업협동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 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수탁기업-----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 업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소기 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신청을-----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u>다</u>만,__「중소기 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 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u>이내에</u> 중소기업중앙회에 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 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 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